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3,546,539	10,006,396
일반회계	311,101,009	9,333,030
특별회계	22,445,530	673,366
기타특별회계	22,445,530	673,36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99,521	92,98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1,483	19,54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328,487	219,8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612,992	18,39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72,804	29,184
수질개선 특별회계	8,004,113	240,123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505,000	45,150
기반시설 특별회계	271,130	8,13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36,00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